•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：80,000,000원 → 환급신청세액 한도액：8,000,000원 ⦁[10,000,000원]－[(100,000,000원－80,000,000원)×0.1] = 10,000,000원－(20,000,000원×0.1)＝8,000,000원 사례 3.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2021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⦁ 과세표준 ⦁ 산출세액 ⦁ 공제감면세액 ⦁ 결정세액 ⦁ 환급신청(재결정)세액 ⦁ 추가환급세액 240,000,000 28,000,000 - 28,000,000 - - 300,000,000 40,000,000 - 40,000,000 - - △350,000,000 (공제신청 240,000,000) - 28,000,000 - △350,000,000 (공제신청 240,000,000) - 34,000,000 6,000,000 • 환급세액의 계산 - 당초：28,000,000－[(240,000,000－240,000,000)×세율(10%, 20%)] ＝28,000,000 - 경정：40,000,000－[(300,000,000－240,000,000)×세율(10%, 20%)] ＝34,000,000 - 추가환급할 세액：34,000,000－28,000,000＝6,000,000 ☞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22사업연도의 결손금 110,000,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21사업연도 과세표준 60,000,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§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